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27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25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5.27
-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24. 5.30
- 상정일자 :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6.20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4. 6.24)
    - 원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태균)

- 의안번호 제1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으로,
-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을 회수하는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4년도 수입·지출계획의 변경으로, 총 853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음
-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, 행정운영경비에서 16백만 원을 감액하고, 정책사업 3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927호, **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#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# 가. 제안이유

- 1).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으로 2024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2)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1). 변경내역 : 총 1개 정책사업(재무활동), 2,344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	
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체육진흥기금	13,442	15,786	2,344	17.4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10,010	10,010	-	-
시민생활체육 진흥	1,201	1,201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2,221	4,565	2,344	105.5
보전지출	2,221	4,565	2,344	105.5
여유자금 예치	2,221	4,565	2,344	105.5
행정운영경비	10	10	-	-

2)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3,442	<b>15,786</b>
이자수입	2,434	2,434
전입금	7,250	7,250
예치금회수	3,758	6,102

### 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3,442	<b>15,786</b>
비용자성사업비	11,211	11,211
기본경비	10	10
여유자금예치	2,221	4,565

### 3. 검토의견

-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증가(23억 4,400만원)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23억 4,4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〈표 3-1〉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 초 ( A 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( C=B-A )	증 감 륜 ( D=C/A )
지출합계	13,442	15,786	2,344	17.4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10,010	10,010	-	-
일반예산 (재무활동)	2,221	4,565	2,344	105.5
보전지출	2,221	4,565	2,344	105.5
여유자금예치	2,221	4,565	2,344	105.5
행정운영경비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	10	10	-	-
시민생활체육진흥	1,201	1,201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,  
②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4. 5.27) 재구성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1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이 당초 지출계획(22억 2,100만원)보다 105.5%, 23억 4,4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(45억 6,500만원)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2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“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”중 증감 및 증감률을 기재하지 않은 바, 이는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---

2)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4조(기금의 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
2.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
3.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
4.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
5. 전국체육대회,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
6.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
7.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 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## 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###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 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# 가. 소위원회

##### ○ 위원구성 :

- 위 원 장 : 이병도(도시계획균형)
- 부위원장 : 신복자(기획경제), 박승진(주택공간)
- 소위원회 : 구미경(행정자치), 박수빈(행정자치)  
김재진(환경수자원), 김규남(문화체육관광)  
유만희(보건복지), 김 경(보건복지)  
이상욱(도시안전건설), 신동원(주택공간)  
박영한(도시계획균형), 이경숙(교통)  
정지웅(교육), 전병주(교육)

※ '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

## 나.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
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1(금) 15:0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# 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2(토) 14:3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# ○ 제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3(일) 15:00 ~ 2024. 6.24(월) 0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 VII. 부대의결 : 「해당 없음」

## 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2024. 6.24)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92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으로 2024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정책사업(재무활동), 2,344백만원 증액  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	
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체육진흥기금	13,442	15,786	2,344	17.4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10,010	10,010	-	-
시민생활체육 진흥	1,201	1,201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2,221	4,565	2,344	105.5
보전지출	2,221	4,565	2,344	105.5
여유자금 예치	2,221	4,565	2,344	105.5
행정운영경비	10	10	-	-

- 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<수입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3,442	15,786
이자수입	2,434	2,434
전입금	7,250	7,250
예치금회수	3,758	6,102

### 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3,442	15,786
비용자성사업비	11,211	11,211
기본경비	10	10
여유자금예치	2,221	4,565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김종욱 (☎ 2133-2679)